

###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02. 3. 7
- 나. 제출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2002. 3. 7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4회 부천시의회(임사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02. 3. 1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정과장 박명호)

가. 제안이유

○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일부 보완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시세심의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9조)
-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매년 6월 16일~6월 30일에서 매년 7월 16일~7월 31일로 조정함(안 제27조의2)
- 상속 개시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순으로 정함(안 제36조제2항)
- 담배소비세 가산세 중 환급을 환부로 조정함(안 제76조제2항제3호)

- 재산세와 병기하여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를 6월 16일~6월 30일에서 매년 7월 16일~7월 31일로 조정함(안 제9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내 용                          | 답 변 내 용     |
|----------------------------------|-------------|
| ○ 전문위원 검토 의견대로 수정 의결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 별문제 없습니다.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 음
-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요지

- 별 첨

7. 소수의견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       |                       |
|-------|-----------------------|
| 의안번호  | 제563호                 |
| 의결년월일 | 2002. 3. 20<br>(제94회) |

제출년월일 : 2002. 3. 19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제9조제4항 중 “위원의 임기는”을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였으나, 위원장은 위원 속에 포함되므로 위원장의 임기를 추가할 필요없이 현행대로 하고
- 제9조제5항 중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앞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삽입하였으나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대로 함

2. 주요골자

- “위원장 및 위원”을 “위원”으로 함(안 제9조제4항)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함(안 제9조제5항)

### 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위원장 및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br>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br>위원장 및 위원 임기는 전임<br>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③위원장 및 위원……………<br>……………<br>……………                    | ③위원……………<br>……………<br>……………           |
| ④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br>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천<br>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br>는 바에 따라 원비 및 여비 등<br>을 지급할 수 있다. | ④……………예산<br>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br>실비변상조례……………<br>…………… | ④……………부천<br>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br>…………… |

[수정안 포함]

### 부천시시세조례증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시세”를 “지방세”로 하고 동조제1항 중 “시세에 관한”을 “지방세에 관한”으로 하며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동조 “제2항 내지 제5항”을 “제3항 내지 제6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중전 제9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고 하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으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76조제2항제3호 중 “환급을”를 “환부를”로 한다.

제97조 중 건축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과 세 대 상 | 과 세 기 준 일 | 납 기              |
| 건 축 물   | 매년 6월 1일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와 시세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p> <p>(신설)</p> <p>②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④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⑤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조직과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 <p>제9조(시세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br/>……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과세표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③……………</p> <p>④……………</p> <p>⑤……………</p> <p>⑥……………</p> |

(신설)

제36조(납세의무자)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제76조(가산세) ①(생략)

②(생략)

1. 및 2. (생략)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4. (생략)

③(생략)

제97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는 다음과 같다.

제27조의 2(과세기준일 및 납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하고,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납세의무자) ①.....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호주승계인
3. 연장자

제76조(가산세)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및 2. (현행과 같음)

3. .... 환부를.....

4.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97조(과세기준일 및 납기) .....  
.....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 납 기                    |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 납 기                    |
|-------|----------|------------------------|-------|----------|------------------------|
| 건 축 물 | 매년 5월 1일 | 매년 6월 16일<br>~6월 30일   | 건 축 물 | 매년 6월 1일 | 매년 7월 16일<br>~7월 30일   |
| 토 지   | 매년 6월 1일 | 매년 10월 16일<br>~10월 31일 | 토 지   | 매년 6월 1일 | 매년 10월 16일<br>~10월 31일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수 정 안                      |
|---|----------------------------------|----------------------------|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④위원장 및 위원.....<br>.....<br>..... | ④위원.....<br>.....<br>..... |

|   |  |   |
|---|--|---|
| <p>④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u>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p>⑤.....<br/>.....<u>예산</u><br/><u>의 범위 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br/>.....</p> | <p>⑤.....<br/>.....<u>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u>.....<br/>.....<br/>.....</p> |
|---|--|---|